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2936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임세원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합10026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카탈로그를 인쇄, 제조, 판매, 반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소,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같은 목록 기재 카탈로그를 폐기하고, 복지용구 제조 유통업 및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사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①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③ 민법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내지 배포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밑에서 2행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13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기화로 원고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과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만든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를 그대로 도용하고 표절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는 ①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행위, ② 편집저작물인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에 대한 복제권 침해행위,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한 성과도용의 부정경쟁행위, ④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4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촬영 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에 게재된 사진들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제품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기는 한다(이하 '원고 촬영 사진'이라 한다).[1]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발적으로 피사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복지용구 중 일부를 촬영한 점, ②

1)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 중 원고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는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와 이 사건 카탈로그의 비교표(갑 제22호증)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사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책자에 게재된 사진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므로, 위 비교표의 원고 카탈로그 부분에 수록된 사진들이 모두 원고 촬영 사진이라는 전제 하에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원고 촬영 사진의 촬영 목적은 피사체인 각 복지용구의 형태나 구조 등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안내책자에 실린 제품 사진 등과 원고 촬영 사진이 위와 같은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③ 원고 촬영 사진의 구도, 명암, 카메라 각도, 촬영기법 등을 보더라도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촬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정도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4면 4행을 "**다.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는 노인용 복지용구 제품의 품명, 제원, 가격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시하고 제품의 사진을 게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복지용구를 고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안내책자에는 이미 제품의 사양과 주요 특징, 대여료 등이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복지용구 유통사들은 위와 같은 안내책자 및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과 제조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제품 정보 등을 사용하여 서로 유사한 내용의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위 카탈로그 중 일부에는 제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사진이 아닌 원고 촬영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편집저작물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편집방식에 창작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영 사진이 활용되었는지 여부가 이 부분 창작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은 아니다.』

○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2행의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어렵다[원고는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 전체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내 개개의 제품 부분(개개의 제품 사진과 그 제품 정보를 함께 배치·편집한 부분)도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원고의 2025. 12. 17. 자 준비서면 12면 참조), 이 역시 특별히 창작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7면 5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제품 관련 설명은 모두 제조사들로부터"를 "제품 관련 설명의 상당 부분은 제조사 등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13행의 "③"부터 16행의 "인정할 수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촬영용 턴테이블 장비를 사용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국책사업은 지능형 고객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14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갑 제24호증 2면 참조),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2020. 8. 11.경 주식회사 D로부터 턴테이블 장비를 1,8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4호증 24면 참조), 원고 촬영 사진이 다른 카탈로그 사진과 비교하여 특별히 경제적 가치나 경쟁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 턴테이블 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촬영 사진 내지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가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촬영 사진 외에 피고가 활용하였다고 주장되는 부분(제품의 제원을 나타내는 화살표 위치, 각도 등)은 제품 광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편집방식으로 원고만의 독창적인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카탈로그(갑 제5, 7호증)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의 제원이 표기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카탈로그와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 사이에 전체적인 구성이나 디자인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특별히 혼동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다른 복지용구 유통사들의 카탈로그와 비교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카탈로그만 특별히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와 피고는 노인 복지용구를 제조하고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매년 발간되는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작업이 위와 같은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제1심판결 9면 2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 파일이 원고의 주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임직원인 G, H이 원고 회사 재직 당시 이를 유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고, 피고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5. 12. 17. 자 준비서면 15~16면 참조).

그러나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의 내용은 다른 업체의 카탈로그와 마찬가지로 배포 즉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입수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카탈로그를 제작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및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를 비롯한 복지용구 유통사들은 카탈로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제조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카탈로그 파일 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2022년도 원고 제작 카탈로그가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카탈로그 제작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구태회

판사 김광남